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본책 983p 91번 정답 번호 : 91	정답	91 ②	91 ② (모두 정답)
		수정 사유	시행처의 문제 이의제기 수용으로 인한 정답 변경
본책 983p 91번 해설 번호 : 91	해설	<p>채권추심회사가 준수해야 할 채무변제 수령 및 사후관리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채권추심회사가 채무 변제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 변제금을 채권추심 위임계약 등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채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 변제금을 수령하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</li> <li>• 금융회사 등은 「신용정보법」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정보제공·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등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</li> </ul>	<p>채권추심회사가 준수해야 할 채무변제 수령 및 사후관리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20조에 따른 「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」 제18조 제2항에서 “채권추심회사가 채무 변제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 변제금을 채권추심 위임계약 등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채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 변제금을 수령하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 본 문제는 해당 요건이 누락되어 지문 부족으로 이의제기를 수용하여 모두 정답 처리되었다.</li> <li>• 금융회사 등은 「신용정보법」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정보제공·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등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</li> </ul>
		수정 사유	시행처의 문제 이의제기 수용으로 인한 정답 변경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 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